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2024년 3차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통지 내용

- 가. 통 지 일 : 2024년 7월 8일(월)
- 나. 통지대상 : 소집 통지자(대표이사) 외 이사 6명, 감사 2명
-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 라. 통보의안(회의목적)
 - 제1호 의안 : 보통재산 수증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2. 회의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3. 회의장소 : 한남동 대표이사 접견실

4.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보통재산 수증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5. 이사정수 : 7명

6. 출석임원 : 구연경, 한승희, 한준호, 윤경희, 신영수, 박영배 이사(이사 6명) / 안용석 감사(감사 1명)

7. 결석임원 : 인요한 이사, 안경태 감사

8.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구연경 대표이사 : 참석 임원에게 감사를 표하다. 개회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LG복지재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9. 회의내용

가. 제1호 의안 : 보통재산 수증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1호 의안인 보통재산 수증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안건설명을 요구하다.
- 이문종 팀장 : 재단의 구연경 대표이사께서 LG복지재단의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용도로 13,025,000천원의 현금과 1,430,000천원 상당의 권리 기부를 약정해 주셨음을 알리다.

세부내역은 배부자료와 같으며, 정관 제24조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바, 기부예정인 현금과 권리를 보통재산으로 수증하기 위한 이사회 심의를 요청하다.

첨부. 기부(지정기부) 내역

구 분	금액(평가액)	지정용도
현 금	13,025,000천원	LG복지재단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제반비용
토지매매 계약 권리(계약금 상당)	1,430,000천원	
계	14,455,000천원	

2) 결의내용

- 참석임원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참고하여 기부 재산의 종류, 가액, 기부 지정 용도, 활용 계획 등을 심도있게 살피고 상호 활발히 논의하다.

의결제척사유에 의거, 이문종 팀장은 해당 재산의 기부자인 구연경 대표이사에게 잠시 퇴실을 요청하다. 대표이사는 연장자인 한승희 이사에게 의결 진행을 위임하고 잠시 퇴실하다.

- 한승희 이사 : 재실 이사들에게 참고자료와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표이사의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수증하고 LG복지재단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부동산 취득 제반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다.

※ 표결 결과 : 찬성 5명 / 반대 0명

- 한승희 이사 :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보통재산으로 수증하는 것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이문종 팀장은 대표이사 재실을 요청하고, 기부 재산의 보통재산 수증이 의결되었음을 보고하다.

나.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사업의 종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문종 팀장 : 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하고자 함을 알리다. 취업 의지가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기초교양/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부지매입과 자립지원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료된 목적사업의 삭제와 신규사업 등록을 위한 정관 제4조(사업의 종류)의 변경이 필요함을 보고하다. 또한 '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감사의 이사회 회의록 날인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정관 제29조(이사회 회의록) 제2항 변경이 필요함을 보고하다.

* 첨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안 (별첨)
* 첨부. 정관 개정안

현행 정관	개정안
<p>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호, 3호, 4호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 아동대상 생계, 의료, 교육 지원</p> <p>4. -</p> <p>5. -</p> <p>6. -</p> <p>7. -</p> <p>8. 사회적 공익과 복지실현을 위한 의인 지원사업</p> <p>9. -</p> <p>10.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조성사업</p> <p>11.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9호 및 제4항에 따른 가정 지원사업</p> <p>12. <신 설></p> <p>제29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p>	<p>제4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p> <p>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p> <p>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호, 3호, 4호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 - 아동대상 생계, 의료, 교육 지원</p> <p>4. -</p> <p>5. -</p> <p>6. -</p> <p>7. -</p> <p>8. 사회적 공익과 복지실현을 위한 의인 지원사업</p> <p>9. -</p> <p>10. <삭 제></p> <p>11. <삭 제></p> <p>12.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자립지원시설 운영 <신 설></p> <p>제29조(이사회 회의록)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강 및 결과를 기록하고 참석임원 전원(의장 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p>

2) 결의내용

- 참석임원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개요와 정관변경안을 충분히 살피고, 신규사업 개시 등 정관변경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 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이사 전원에게 정관변경 승인을 위한 표결을 요청하다.
-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변경 원안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찬성 : 6명 / 반대 : 0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2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 제3호 의안 :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

1) 의안설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3호 의안인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을 상정하고 실무자에게 의안 설명을 요구하다.
- 이문종 팀장 : 수증한 보통재산의 세입 반영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직원전입에 따른 인건비 세출 반영 등을 위한 2024년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알리다.

추경예산안은 배부자료와 같음을 알리고 '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를 요청하다

첨부. 2024년 사업계획(예산) 변경안

(단위:원)

사업명	'24년 1차 추경예산	'24년 본예산	증 감
의인상	1,500,000,000	1,500,000,000	0
저소득층 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1,400,000,000	1,400,000,000	0
(성장호르몬제 당년도 지출)	(1,370,714,810)	(1,400,000,000)	(Δ29,285,190)
(성장호르몬제 과년도 지출)	(29,285,190)	0	(29,285,190)
교육비 지원	200,000,000	200,000,000	0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20,900,000	1,000,000,000	Δ979,100,000
사할린 한인 지원	1,845,000	0	1,845,000
계	3,122,745,000	4,100,000,000	Δ977,255,000

첨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안

(법인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24년 1차 추경(A)	'24년 본예산(B)	증감(A-B)
수입	후원금수입	15,855,000	1,400,000	14,455,000
	전입금	2,400,000	3,200,000	△800,000
	과년도지출	29,285	0	29,285
	이월금	1,903,328	2,094,639	△191,311
	계	20,187,613	6,694,639	13,492,974
지출	사무비	657,500	418,000	293,500
	재산조성비	15,021,000	0	15,021,000
	사업비	3,093,460	4,100,000	△1,006,540
	과년도지출	29,285	0	29,285
	예비비	1,386,368	2,176,639	△790,271
	계	20,187,613	6,694,639	13,492,974

(수익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관별	'24년 1차 추경(A)	'24년 본예산(B)	증감(A-B)
수입	재산수입	4,138,000	3,966,000	172,000
	이월금	4,975,742	4,157,234	818,508
	계	9,113,742	8,123,234	990,508
지출	재산조성비	967,000	967,000	0
	전출금	2,400,000	3,200,000	△800,000
	예비비	5,746,742	3,956,234	1,790,508
	계	9,113,742	8,123,234	990,508

2) 결의내용

- 참석임원 전원 : 배부자료와 실무자와의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추경예산 편성안을 살피고 상호 논의하다.
- 구연경 대표이사 :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 여부를 확인한 뒤, 참석이사 전원에게 '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표결을 요청하다
-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원안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찬성 : 6명 / 반대 : 0명)
- 구연경 대표이사 : 제3호 의안인 2024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의 건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언하다.

10. 폐 회

- 대표이사는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4년 3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

대표이사

구연경



이사

한승희



이사

한준호



이사

윤경희



이사

신영수



이사

박영배



감사

안경태



감사

안용석

